

2026년 제7회 공무원직 근로자(방호원) 채용 공고

전주교도소에서 근무할 공무원직 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전주교도소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채용직종	선발인원
전주교도소	공무원직 근로자	방호원	1명

2. 담당예정 직무

- 교정기관 외부정문 경비 및 보안점검
- 교정기관 출입 민원인 안내 및 차량 통제
- 울타리 주변 등 외곽 순찰
- 특이사항 발생 시 보안본부 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등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3. 근무 체계

- 주간 고정근무: 주5일 근무(평일 8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 3교대 순환근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 주간 근무: 8시간(08:00~17:00)
 - 주간 근무: 8시간(08:00~17:00)

- 주간 고정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는 주기적으로 순환근무

※ 출·퇴근시간 등 근무 형태 관련 문의는 전주교도소 총무과에 문의[☎ 063-224-4361(204)]

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5.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택일하여 응시)

채용분야	경력 요건
공무직 (방호원)	①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단, 신입교육 이수일 또는 경비업무 퇴직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에 한함(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필수,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등 참고)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임용령」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자격시험 합격 후 기본교육을 미이수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는 제외

※ 경력은 해당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해당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경비, 보안)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상근 근무 원칙 (단,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할 수 있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병력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성별, 학력, 거주지 : 제한 없음
- 교대근무 및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6. 우대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우대사항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만 적용함

- 경비·보안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경비·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 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경력요건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가점 배제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 단증 2단 이상 보유자(단수별 차등 배점)

< 무도단증 인정기준 >

-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10개)가 인정한 단증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에서 인정한 단증
 - * 단체 : 무도관련 가산점 인정 51개 단체
- ※ 단증은 단일 종목의 단증에 한하며 복수 단증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1개 단체

※ 법무부 복자과·21622(2021. 8. 31.) 「교정시설 방호원 채용 시 무도단종 인정 기준 확대변경 안내」에 따름

※ 무도 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예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7. 가산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참고 사항

- 가산점은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음

8. 급여 및 후생복지

- 기본급(월급제): 2,155,880원
- 정액급식비: 매월 160,000원
- 명절휴가비: 연 2회×1,293,530원
- 맞춤형복지비: 연 1회×500,000원
- 기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등

9.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소극적 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이 서류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 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적극적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위원이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 | |
|--------------------------|---------------|
| ①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 |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평가방법(합격기준)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로 계량화하여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들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들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 가점 적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10.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6. 6. 9.(월) ~ 6. 19.(금)	'26. 6. 17.(수) ~ 6. 19.(금)	'26. 6. 30.(화)	'26. 7. 8.(수) 14:00	'26. 7. 20.(월)

※ 임용일은 주후 통지함(8월~)

- ※ 채용공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나. 접수기간

- 2026. 6. 17.(수) ~ 6. 19.(금) 09:00~18:00

다. 접수처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주교도소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55128)	063) 224-4361 (내선 204)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인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빠른등기)는 **접수 마감일('26. 6. 19.)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험 당일 응시표를 교부합니다. 또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미수신시 접수처로 확인 바람)

12.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목록 1부(필수)	○ <별지서식 제1호> 작성
2. 응시원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3. 이력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4호>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5호> 작성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6호> 작성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7호> 작성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필수)	○ <별지서식 제8호> 작성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9호> 작성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10호> 작성
11. 공정채용 확인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11호> 작성
12.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필수)	○ 재학, 휴직, 재직, 졸업예정 증명서 중 해당사항 제출 ※ 서류, 면접 등 위원 제척사유로만 사용
13.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남자인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을 제출
14. 응시 자격 증빙서류(필수) * 응시 자격요건 ① ~ ⑥ 중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①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 사본 1부 ②③④⑤ 해당되는 경우 경력증명에 필요한 서류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 3가지 모두 제출해야 경력 인정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⑥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명서 사본 1부
15.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 경력(재직)증명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 3가지 모두 제출해야 경력 인정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명서 사본 ○ 무도 단증 사본 (붙임 2)
16. 가산 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산 사항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을 위해 ① 경력증명서 +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① ② ③ 모두 제출해야 함(제출된 증명서상 경력 기간이 모두 동일한 기간만 인정)

※ 제출서류 누락 시 경력이 불인정 됨에 유의

① 경력증명서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 경력증명서에 업체명, 근무기간(연, 월, 일 표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간(연락처 포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 기관편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추가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 ▶ 비정규직(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따라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경력은 주9시간 기준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2년 인정)
-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13호, 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제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③ 소득금액 증명서

-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도소 총무과☎ 063-224-4361, 내선 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전주교도소 총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전주교도소	방호원

■ 작성목록(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필수여부	제출유무
1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전동의서		필수	☐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필수	☐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필수	☐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11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필수	☐
12	최종학력 증명서(사본)		필수	☐
13	주민등록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필수	☐
14	응시 자격 요건 ①~⑥ 중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①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 사본	해당자 필수	☐
		②③④⑤해당되는 경우 경력증명에 필요한 서류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소득 금액 증명서 → 3가지 모두 제출해야 경력 인정	해당자 필수	☐
		⑥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명서 사본	해당자 필수	☐
15	우대 사항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명서 사본	해당자만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 경력(재직)증명서+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소득 금액 증명서 → 3가지 모두 제출해야 경력 인정	해당자만	☐
		무도 단증 사본	해당자만	☐
16	가산 사항 증빙서류		해당자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성명 :

(서명)

전주교도소장 귀 하

<별지서식 제2호>

응시원서

전주교도소장 귀하

본인은 전주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직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공무직 근로자) 시험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방 호 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전주교도소장 ㉞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이 력 서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공무직근로자	응시 직급	방호원	성명
----------	----------	----------	--------	----------	-----	----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00교도소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년 00월)	교감	보안 업무	전임 (주40시간 이상)
	00경찰서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년 00월)	경감	치안 업무	전임 (주40시간 이상)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일반경비원신임교육		0000년 00월 00일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00교도소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년 00월)		교감	보안 업무	전임 (주40시간 이상)
	00경찰서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년 00월)		경감	치안 업무	전임 (주40시간 이상)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단 증	종목		단수	단증취득일	발행단체명	
취 업 지 원 등	구분		세부내용		발행기관	

성명 : (인)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은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공무직근로자(방호원)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 안내]
-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2매 이내로 작성
 -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공무직 근로자(방호원)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 안내]
-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3매 이내로 작성
 -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10%), 실천방안(80%)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생년월일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직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u> <u>출입국·외국인청</u> <u>(사무소)</u>	공무직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u> <u>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u> <u>보유기관</u>	공무직 채용 관리	<u>학위, 경력사항 등</u> <u>응시요건 충족 및</u> <u>제출서류 진위여부</u> <u>확인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확인
(3) 제공하는 정보(교육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생년월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주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전주교도소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채용직위(직급)	공무직 (방호원)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2026년 8월 중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8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인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월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전주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주교도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직 등 응시결격 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 조회		
2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서식 제10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전주교도소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전주교도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전주교도소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채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인지,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인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전주교도소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주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력(재직) 증명서(예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① 근무기간		근무기관 (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②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③	비고 (주 근무시간 기재)												
	부터	까지																	
	(예시)																		
	'10.5.1 '14.5.31		00교도소	교감 (6급)	보안 업무	전임	주 40시간												
	총 3년6월 (42개월) ※ 휴직사유 및 기간 기재																		
		00교도소	교위 (7급)	보안 업무	비전임	주 20시간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행청		년월일	종 류	시행청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table><tr><th colspan="2">발급자</th></tr><tr><td>소 속</td><td></td></tr><tr><td>직 급</td><td></td></tr><tr><td>연락처</td><td></td></tr><tr><td>성 명</td><td>(인)</td></tr></table>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① 근무기간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담당업무 : 근무기간 동안 구체적 업무 기재 (예) 응급실 근무, 내과 진료, 영상의학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③ 근무형태 : 상근/비상근 여부 구분 ※ 발급자 및 기관대표자 명의 반드시 날인																			